

【 해외금융뉴스: 중국 】

예금보험제도, 내년 시행 예정

□ 중국인민은행은 예금보험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국무원에 정식으로 비준을 신청한 상태라고 밝혀,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시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.

- 금융위기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예금자 보호를 위한 예금보험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중국 정부가 인식한 결과임 .
- 예금보험제도가 시행되면 상업은행, 합작은행, 도시 및 농촌신용회사, 우체국 등 예금업무를 취급하는 모든 금융기관이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, 이에 따라 금융기관에 개설된 예금계좌의 98% 이상이 예금보험제도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됨.
- 업계에서는 예금보험제도가 중앙은행, 감독기관과 더불어 금융산업을 보호하는 3대 핵심축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음.

□ 예금보험이 제공하는 보험금은 한도액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, 예금보험의 재원은 보험가입 금융기관이 납입하는 예금보험기금으로 충당하게 됨.

- 예금보험에 가입한 금융기관이 파산할 경우에 예금주는 해당 금융기관에 맡긴 돈을 규정된 한도 내에서 100% 보장 받고, 보장 한도 초과액에 대해서는 해당 금융기관의 청산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보상 받을 수 있도록 함.
- 만약 예금주가 동일 금융기관에 여러 개의 계좌를 개설한 경우에는 각 계좌의 잔액을 합산하여 한도액을 계산하며, 아울러 금융기관별 요율을 차등함으로써, 신용이 양호한 금융기관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할 예정임.
- 보험가입 금융기관이 납입하는 예금보험기금을 은행이 임대료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별도의 기관이 종합 관리할 것으로 예상됨.

(증권시보 12/2,
종재망 11/27,
신화망 11/27)